2025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문계약직(변호사) 채용 재공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근무할 전문계약직(변호사)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개요

모 집 분 야	인 원	주 요 업 무
변 호 사	1명	■ 채권회수 관련 법률 자문, 송무, 기관 법무지원 등 법률 업무 전반

※ 본 채용 계획 및 이에 따른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으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대상임

2 응시자격

구 분	자 격 요 건
자격요건	■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국내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직무경력 1년 이상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실무수습기간 포함)
공통요건	■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력, 전공, 연령, 성별 등의 제한 없음 (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만60세 이상인 자는 지원불가) ■ 남성의 경우, 병역필(예비소집일 이전 전역예정자 포함) 또는 면제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및 중진공 인사규정 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3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국가보훈대상) : 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최소 모집단위별 최종 선발예정인원이 3인 이하인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별우대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단, 동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산점 적용(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1개만 부여)

4 근무조건

○ 신 분 :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 직책(직위) : 변호사

○ 근무기간 : 1년(관련법령 및 성과에 따라 최대 1년 이내 계약 연장 가능)

○ 근무조건 : 주 5일(주 40시간)

○ 근무지 : 서울(중진공 수도권금융자산관리실)

* 다만, 근무지는 서울이나 영남권 소재 지역본·지부에서 발생하는 업무 수행 예정

○ 보 수 : 70백만원 내외(중진공 내규에 따름)

* 성과급 등은 지급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5 입사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2. 21.(금) 10:00 ~ 2025. 3. 7.(금) 17:00**

○ 접수방법 : E-mail 제출(recruit@kosmes.or.kr)

* 이메일 접수가 완료되면, 메일 도착에 대한 회신이 발송될 예정이고 회신 메일 혹은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 문의처로 유선 연락 필요**(방문·우편 접수 불가)**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재경영실 채용 담당자(055-751-9348)

○ 결과발표 : 전형단계별 결과는 개별통보

6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 (지정서식)	• 입사지원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경력·경험기술서 1부 • 직무수행계획서 1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서류전형 합격자	•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주민등록초본(남성에 한하여 병역사항 기재)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근무기관, 부서, 담당업무, 직위, 근무기간 등 명기 및 발급기관(단체) 인장날인 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사항 포함)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등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면접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작성방식)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입사지원 시 성별, 연령, 출신학교, 출신지역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서의 생월일은 개인 식별을 위해서만 사용
- **(경력증명)** 응시자격에 해당되는 경력사항만 제출
  * 경력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력은 불인정
- **(제출방식)** 공통서류는 온라인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서류는 면접일 지참 및 현장 제출
  *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마스킹 처리·스캔하여 제출
- **(지정서식)**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 채용공고에서 내려 받아 사용

7 전형절차 및 일정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적부심사)	면접전형 (1배수 선발)	예비소집	임 용
•(모집공고) '25.2.21. •(입사지원서 접수) '25.2.21.~3.7.	•(심사기간) '25.3.10.~3.13. •(합격자 발표) '25.3.14.	•(면접일자) '25.3.19. •(합격자 발표) '25.3.24.	• '25.3.26.	'25.3.31.

* 전형절차 및 일정은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전형절차별 평가방법

○ **(서류)** 심사기준에 따라 적부심사

전형	심 사 기 준
서류	■ 응시자격 충족 여부 확인 ■ 부적격자 판정기준 - 서류 작성분량이 문항별 최대글자수의 30%에 미달 - 의미 없는 내용 기재, 공란 반복, 타 기관 지원 등

○ **(면접)** 다대일·경험면접(30분/조)

전형	평 가 기 준
면접	■ 전문성(25점), 논리력(25점), 가치관(25점), 성실성(25점) * 가점 별도(취업지원대상자 5점 또는 10점)
최종합격자 선정	■ 총점 60점 이상인 자 中 고득점자 순 선발 ■ 동점자가 있을 경우 아래 1)→2) 순서에 따라 선발 1)「국가유공자법」제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2) 평가항목 순* 고득점자 선발 * 전문성 → 논리력 → 가치관 → 성실성 順

9 기타사항

○ 본 계획(절차 및 일정)은 중진공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에 공고합니다.

○ 입사지원서에 경력, 자격사항 등을 오기재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증빙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입사지원서(오기재·허위기재 등 포함) 및 증빙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의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합격을 취소합니다.

○ 자기소개서, 경력·경험기술서, 직무수행계획서에 직·간접적으로 본인 성명, 학교명, 가족관계, 지인(중진공 근무) 등의 인적사항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1개월까지 운영, 2배수)

○ 채용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전형별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메일(recruit@kosmes.or.kr)로 접수합니다. 이의신청 시 응시자 본인의 성명 및 연락처, 이의사항 등을 기재하되, 채용과 무관한 질의사항 및 개인정보 요구 등은 제외합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 따라 청구기간 이내('25.4.30.) 서류 반환을 요청한 자에 한해서만 서류 일체를 반환할 예정입니다.

○ 합격 이후에도 중진공 규정상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사법처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합격 취소일로부터 향후 5년간 우리 공단 채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부정합격자)** ①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②해당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에 합격한 본인

○ 전형결과 모집분야에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재경영실 (☎ 055-751-9348)

별첨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채용결격사유

□ 중진공「인사규정」제15조(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8. 병역 기피 중에 있는 자
9. 신체검사 결과 정신이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1.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적용규정: 중진공 내규(인사규정, '24.12.30. 시행)

별첨2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